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참조13)

2021. 3. 22.(월) 10:00

본 회의 장

제2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성 남 시 의 회

목 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 강상태 입니다.
-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참고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 첫 번째,

“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원하여 성남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두 번째,

“성남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 능률을 높이는 동시에
낭비요인을 없애므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세 번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상호간 협력 및 지방자치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설립된 「지방대도시시장협의회」의 규약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네 번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방정부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섯 번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내·외 지방행정 모범 사례 공유와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설립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여섯 번째,

“성남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에 의해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조례 존속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일곱 번째,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관별 채용절차가 각각 다르게 진행되어 통일된 체계 및 전담인력이 부족하고 간헐적 채용 등으로 전문성이 부족하여 투명성 및 공정성을 향상하기 위한 통합채용을 도입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여덟 번째,

“성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성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아홉 번째,

“성남시 청소년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성남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운영에 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열 번째,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조성된 체육시설을 전문 체육단체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 강 상 태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선임 입니다.
-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 첫 번째,

“성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
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
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 제2조제3호 중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를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행태에 상관없이 일터
에서 일하는 사람” 으로 한다.

○ 제4조 중 “종사하는” 을 “종사하거나 시에 거주하는”
으로 한다.

○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에 따른 성남시 노동권익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 구성)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준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한다.

이와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두 번째,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 및 직업의 다변화로
비제조업 근로자의 임주가 증가하고 임주율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대두되어 임주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세 번째,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에
의하여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21년도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네 번째,

“재단법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 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재단사무국 이전에 따른 정관 내 주소지 변경을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섯 번째,

“성남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거
성남시 관내 중소기업자 협업 및 공동사업을 위하여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 제6조제3항 삭제, 제7조제2항 삭제, 제8조제3항
삭제,

○ 제11조 중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여섯 번째,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고령친화기업 지원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의 위탁 운영기간이 2021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해 「성남시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일곱 번째,
이기인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으로 민간의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산세의 증가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1가구 1개 주택을 소유한 개인에 한해 50%의 재산세를 감면하여 시민들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경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의견이 나뉘어져 표결한 결과에 따라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 여덟 번째,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제74조~제83조 개정으로
납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 세세목의 종류가 개정됨에
따라 「성남시 시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아홉 번째,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1년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
으로 이관되는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 2020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사항에 대하여 시세 감면이 지속적
으로 필요한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열 번째,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연장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 건축물에 국한되었던 감면대상을 업종과 규모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여 보다 많은 자영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 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으로 도출된 결과인 만큼
보고한 “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 선 임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 !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남용삼 입니다.
-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3월 18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 첫번째,

서은경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 대상 중 무연고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여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 절차를 처리할 수 없는 이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제공함으로써 공영장례 지원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두번째,

최미경 의원님 등 스물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지원하여, 자원재활용 수집의 촉진과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

조례안 제7조 제4호의

“지원대상의 낙상”을

“지원대상이 재활동 수집 중 발생한 낙상”으로

“지원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세 번째,

남용삼 의원님 등 서른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고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발의되었으나,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 네 번째,

이준배 의원님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아동 인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제19조 제1항의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를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섯번째,

박경희 의원님 등 스물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조례안 제5조제1항 중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를

“아동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로 수정하고

- 조례안 제8조의 제목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를

“(아동보호 민간협의체 설치)”로 하고,

-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아동보호 민간협의체(이하 “협의체”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아동학대예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2. 법률, 의료 등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사례에 대한 자문”

이라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4호의 내용 중

“아동학대의”를 “아동학대”로,

“위하여”를 “위해”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3. 아동학대 사례 및 아동 간 성 행동 문제 개입 및

처리방안 논의”라고 신설하여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여섯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9월부터 개원 예정인
LH고등지구(S-3) 어린이집 등 4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남 용 삼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존경하는 의장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는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봉규 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난 3월 18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3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관계법령 및 기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 첫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조례 운영 시 해석을 명확하게 하고 도시관리계획 세부시설 변경 시 경미한 사항을 신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두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성남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세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제7기 공약사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공공 지원 강화’ 및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지원시설 확대 요구를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조금 중복지원 제한기간을 최소 단지별 5년 이상으로 규정하여 동일 단지의 중복 지원을 지양하는 조례안으로

- 조례안 **【별표1】** 1번 내용 중 “※보조금 지원은 2.를 준용”을 “보조금 지원은 2번을 준용”으로 수정 하며, 또한 “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으로 수정하며,
조례안 【별표1】 3번 내용 중“나.”단어를 삭제하고,

내용중“단, 중앙정부 및 경기도 등과 매칭사
업을 실시하거나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를“다
만, 국도비 등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의 경우”로 수
정하며,

“나. 보조금 신청은 상한액에 도달할때까지 신
청할수 있으며, 상한액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다음해부터 5년 이내 재신청 할수 없다.”를 신설
한다.

- 조례안 부칙 제4조(경과조치) 조문 중에서,
부칙안 제목“경과조치”를“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에 관한 경과조치”로 수정하고,
부칙안 내용“진행중인 사업”을“진행중인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수정한다. 로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오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 호 근